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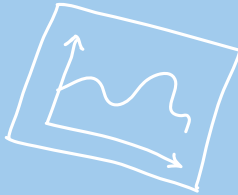
제4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0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0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투명한도시서울 정보소통광장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안내
정보목적
정보공개관련규정

경보공개 청구안내

자세히 보기 →

재정정보

2013년 12월 03일 현재

2013년 예산: 23,806,900,000,000원

총 지출현황: 18,720,102,133,282원 (79.6%)

여계 지출액: 702,045,446,219원

유감 지출액: 764,608,840,689원

실감 지출액: 96,082,300원

서울시 차부: 18조 2,413억원

등록건수 조회수

일반공공행정 (235 건)

분양정보	공공도서관	위원회회의	업무수진비
2013년 12월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2013-12-02	2013년 제8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결과	2013-12-03
2013. 11월 문화정책실 간담회결과 업무추진비	2013-12-02	2013년 제34차 간담회결과 개최 결과	2013-12-02
2013. 11월 김포로정당당원 업무추진비 증가	2013-12-02	제22차 환경정책평가심의회 개최결과	2013-12-02
2013. 11월 김포로정당당원 업무추진비 증가	2013-12-02	제60차 서울시민디자인심의회(제22차)공공항목평가	2013-12-02
2013. 11월 문화정책실 예산(안)과 업무추진비 사	2013-12-02	2013년 제18차 도시건축정책위원회 회의결과	2013-12-02
2013. 11월 도시안전실장, 시정안전관리관, 도	2013-12-02	북서서울시민체육회 개최결과(11월)	2013-12-02
2013. 11월 용산노년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3-12-02	서울시도시발전정책위원회회의 개최 결과	2013-12-02

메이드인서울

시민참여재

주요통계	통계분석
2013-11-14 서울진구(현명)	10,413 +0.6 2013.3.14
2013-10-27 교육진(명)	246,841 -6.9 2013.3.14
2013-10-27 일가족(명)	1,059 4.4 2012
소배출(가정주)	107.9 -0.1 2013.11
실업률(%)	3.4 0.0 2013.10

지역개발 (39 건)

보건 (24 건)

문화재 (21 건)

환경보호 (15 건)

공공질서및 안전 (7 건)

산업중소기업 (4 건)

수송및교통 (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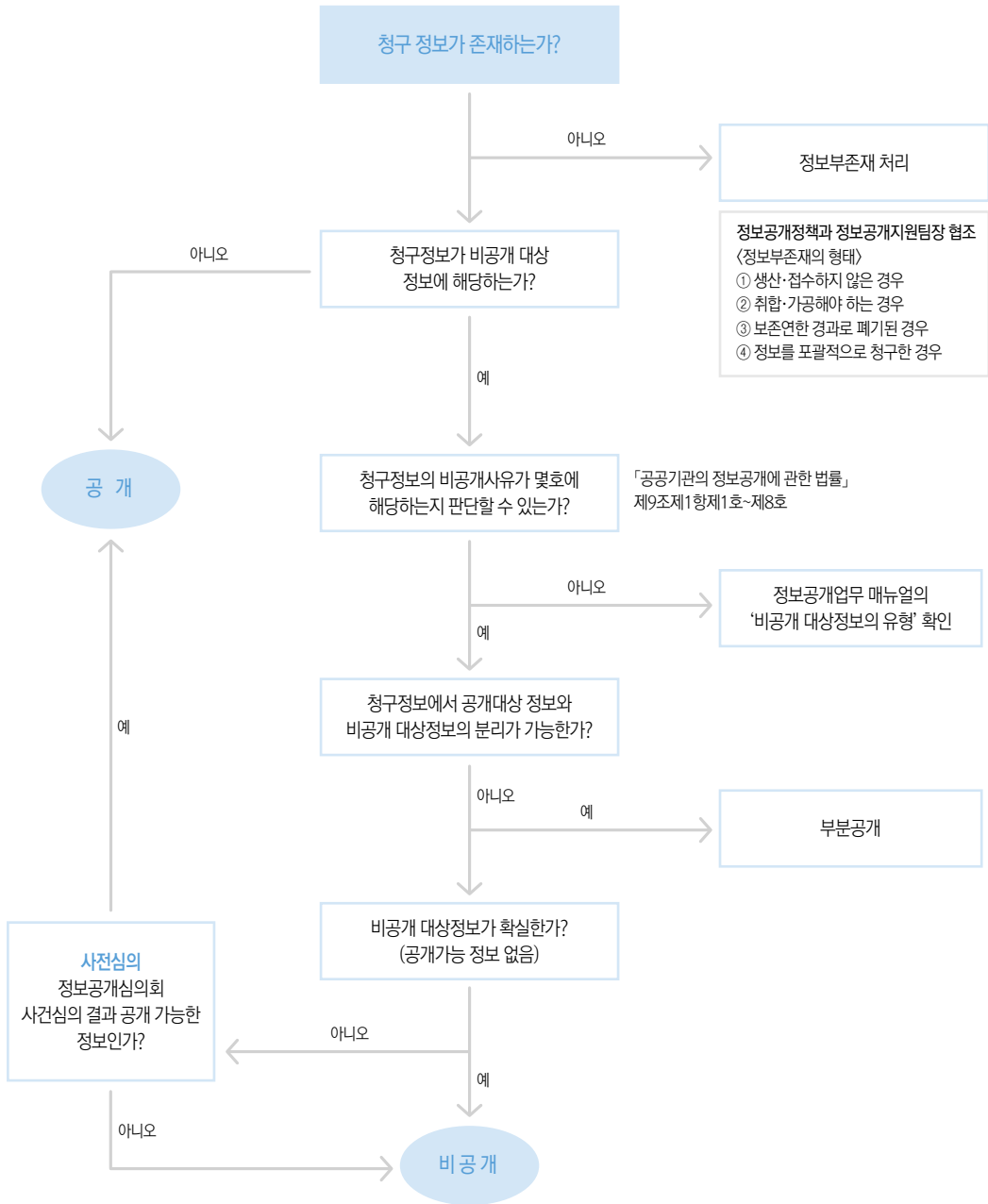
실시간 인기검색어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문서관리
마곡 oda
문서 버스
전자 계약체결
업무기
임상수 지식
서울 공유경제
전자결제
수상구조

2013년 12월 03일 현재

<http://opengov.seoul.go.kr>

비공개 정보 판단 절차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병역사항(변동)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 신청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민간투자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3항 ★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인 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69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 (보호구역)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0조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 및 총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총무 관련 상수도 시행계획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 및 총무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직장내 민방위 및 예비군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전시에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 정보	행사종료후공개가능여부재검토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 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위기대응매뉴얼, 위기·재난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서울시 청사 입체도면, 서울시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및 정수장의 도면·구조도, 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위치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공개 필요
	급·배수 계획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여권, 인감관리대장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 지번의 매매가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4호	<p>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청사경비 초소위치, 청사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순찰일지, 청사경비 시스템	
5호	<p>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p>*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p>	
	불시감사계획	*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결과는 공개
	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감독·점검종료 후 공개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관련 호수 : 7호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관련 호수 : 6호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관련 호수 : 6호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관련 호수 : 6호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관련 호수 : 6호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사업검토서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계획서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공식발표 이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관련 호수 : 7호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종료 후 공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관련 호수 : 7호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관련 호수 : 7호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시험공고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관련 호수 : 6호
	인사위원회 회의록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무원의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공무원 중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무원의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공무원의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인사기록카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공무원의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인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공인의 가족관계	
	공인의 학력,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공인의 범죄사실기록	
	공인의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시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일반시민의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일반시민의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일반시민의 범죄사실기록	
	일반시민의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신고자, 제보자 음성파일 및 신상정보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자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구분	비공개 기준 및 대상 정보	비고
7호	<p>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법인설립허가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p> <p>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p> <p>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결과</p> <p>공사도급계약서</p> <p>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p> <p>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p>	<p>*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p> <p>*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p>
8호	<p>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결과</p> <p>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도면</p> <p>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 계획 및 도면</p>	<p>*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p>

‘현저한’, ‘상당한’의 의미

- ◆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10두2913)
 - ◆ 결국 ‘현저한’ 또는 ‘상당한’ 공익침해는 사안별로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현저한’ 또는 ‘상당한’ 것을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공개 시 추상적이지 않은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공익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논술형 시험의 답안지 청구(대법원 2000두6114)
답안지는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와 같이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어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및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기준(부산고법 2010누5615)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정보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호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권에 1차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
 - 첫째, 해당 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함
 -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둘째,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②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함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업무 처리자의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개괄적으로 수사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 조항	관련호수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6호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의 신상정보 감염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6호
병역사항(병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6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6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6호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직무 발명의 내용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민간투자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 ★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6호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 조항	관련호수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간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30조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제6항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과 제9조제1항제1호 비교

구분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29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2항 • 「국회법」 제128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통계법」 제3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제61조 • 「행정심판법」 제41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적용 예시	<p>「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p>	<p>「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p>

•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①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 ② 정보공개 대상
- ③ 범위 및 절차
- ④ 비공개 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시 의원 현황 및 인원정리 전 의원별 배정 비서관 현황 및 급여 예산 현황, 지적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이행상황 등 (정책연구실)
-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청구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 2월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사본(도로계획과)
- 서울제물포터널 장래요금 및 교통량(도로계획과)
- 평창터널, 은평새길 사업 관련 PIMAC 결과보고서(도로계획과)
- 제물포구간이 지하화하기 위한 KDI 용역보고서와 서울시 상세도로계획 등(도로계획과)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은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처리 시 비공개 사유 해제시점 및 공개가능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명단(지구단위계획과)
- 2003년 1월 1일~2008년 5월 20일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했던 외부참가위원 명단 및 소속(도시계획과)
- ▶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위원회의 외부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15~17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시계획과)
- 2008년 11월 11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관련 도시 재정비추진회의 회의록 일체(재정비과)
- 공릉2동 태릉현대(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 지정심의 관련 2007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지구단위계획과)
- ▶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정비촉진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발언자는 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홍대입구 반경 1km 부근의 하수 관망자료 (물재생계획과)
- ▶ 당초 청구내용이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93조의 별표2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왕십리교회 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내 왕십리교회에 대한 2009. 3. 27 수용재결사항(토지관리과)
- 최근 5년 간 공무원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인사과)
- ▶ 당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 명단과 소속, 직업 등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안이 통과된 회의의 회의록(도시계획과)
- ▶ 당초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직원) 현황, 명단, 징계사유 및 조치결과
- ▶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하수 관망자료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로서 공개제한 정보이므로 속성이 포함된 도형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부분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청구내용 중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분리가능하면, 비공개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가린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위원회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회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과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의 내용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로, 이는 회의 내용의 공개여부를 규정한 것이 아닌 징계위원회의 회의 자체의 비공개 진행을 규정한 것으로서 회의록을 이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청구내용 중 개인 식별 정보(명단 등)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법령 해석례 11-0341)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동대문구 구의회 의정비와 관련된 ○○○의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확인(민원조사담당관)
- 관악구청 돈주고 상반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민원조사담당관)
- 북아현○구역 주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대표자가 신청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사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사본 등(민원조사담당관)
- 금호 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감사 청구 자료 일체(민원조사담당관)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통화내역(녹취파일 및 녹취록)(시민고객담당관)
- ▶ 당초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청구 당시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
-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녹취시스템 관리 방안'에 의하면, 녹취파일 및 녹취록은 통화 당사자에 한해 청취 및 제공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행심 08-93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의 의결서 및 의사록 일체(법무담당관)
- 사건명 10-164 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무효 확인 등의 심문회 녹취록(법무담당관)
- ▶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해 비밀유지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한 바(법령 해석례 11-014)

동 규정에 따른 민원내용 및 민원인 신상내용을 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의 비공개 사유(근거)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청구내용 중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법률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녹취록은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공개하며 제3자가 청구한 경우는 통화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별 정황을 종합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음성 정보로 위·변조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열람(청취)은 가능하나 청구인이 제3자인 경우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국세청발표 고액 상습체납자 ○○건설의 시세납부 현황 및 체납항목 및 금액(세무과)
- 서울시가 ○○○로부터 받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금액(세무과)
- ○○○의 지방세 심사결정서(세무과)
- ○○○의 과거 20년간 취득세, 등록세 납부내역(세무과)
- 목동한강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교부 청구(세무과) (※○○○○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세무과))
- 서울시 모든 국회의원들의 세금체납내역(세무과)
- 전자담배에 부과 된 각 업체별 부과, 징수 금액(세무과)
- 납세유공자 명단 및 직업 납세유공자 선정 이유, 납세실적(세무과)
- 서울시장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입증증거(세제과)
- 구두수선대 제작구매설치해당 제품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재무공과 제09-414호 관련)(재무과)
-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의해 비밀유자가 부과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개별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세무과)
- ▶ 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 타 법률(「지방세기본법」 제114조1항)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9. 18)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세 부과사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 최근 5년간 분기별 택시부가가치세 환급금 현황 (법인별 구분, 택시기사수 포함) (택시물류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사항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4항 및 서울지방국세청 제3자의견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최신 결과를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3. 4. 1)

법인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보는 비공개
다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세무서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 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지번(위치정보)가 더해진 자료(정보공개정책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며,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3조(비밀의 보호)를 들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5)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자료는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된 자료이며,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통계법」 제30조 등에 따라 '통계정보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비공개

- 서행심 2012-□□□ 개별주택 가격결정취소 사건의 구술심리의 녹음기록(법무담당관)
-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8. 28)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의견서, 녹취록 등(법무담당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3. 11)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의거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는 녹취록과 의견서는 비공개, 재결에 관련된 정보로서 담당자 검토의견서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 보아 비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 비공개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한 회의 자료
- ▶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창원지법 2003구합1736)

「국회법」 제118조제4항 본문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서울행법 2005구합2813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에 부과된 과세정보 ▶ 비공개 	<p>「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대법원 2006두182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정보 ▶ 비공개 	<p>‘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서울고법 2002누19086 / 국무총리행심 03-049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의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 여부 ▶ 비해당 	<p>「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11-03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 여부 ▶ 비해당 	<p>「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11-0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해당 	<p>「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연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11-0350)</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등록부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전체 공개 가능 여부

▶ 가능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를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순히 세무공무원 개인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세무관서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함께 부과한 것으로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한정되는 것이며, 관련된 비밀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개인의 비밀보장 훼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지장 초래, 과세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나아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특별히 비밀정보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법령 해석례 11-0345)

-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 비공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11구합36838)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해당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1두16735)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함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세부기준(현저성과 상당성 판단기준)

-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을지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 적의 공격 시 효과적인 대피 및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위기발생 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될 경우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을지연습 총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 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 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 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p>귀빈참석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의 시간, 장소, 이동경로 및 동선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이나 숙소정보 <p>★ 행사 종료 후 공개 여부 재검토</p>	<p>공개될 경우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인사 등 귀빈의 거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p>
<p>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p>★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p>	<p>공개될 경우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p> <p>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p>
<p>청사관리 (방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사 입체도면 • 서울시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 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p>★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p>	<p>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p>
<p>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목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도면 및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 경로 관련 계획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 구조도, 위치 	<p>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목표시설 행정관서, 방송국, 발전소, 공항, 군시설, 과학연구소, 교통시설, 상수원 등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대합실 등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사각지대 먹을거리(개고기·민물고기) 안전성검사 강화계획 및 안전성 검사결과 (축산물부) ▶ 과거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를 다수 계획하고 개최할 당시, 우리나라가 개고기와 같은 혐오식품을 섭취하는 국가로 각인됨에 따라 국제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어 각종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p>공개</p> <p>현재 대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혐오식품을 섭취하는 국가의 이미지가 외교관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이 과거와 같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동일한 청구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성곽정 비복원공사 준공수리보고서(문화재과) ▶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은 제외하고 공개함(부분공개) 	<p>부분공개</p> <p>해당 문건 중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등은 국가안보·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2012년 1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현황(수상관리과) - 관공선의 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행일지 ▶ 전시대비 시설인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부분공개) 	<p>부분공개</p> <p>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중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비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에 의해 관리되는 전시대비 시설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임</p> <p>따라서 해당 관공선의 자료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2010년 상황별 위기관리매뉴얼'(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상황조치 등 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p>비공개</p> <p>정수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이며, '2010년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함</p> <p>이러한 목적의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물적·인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시 신청사 지하의 화생방대피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공공사업부)
- ▶ 화생방대피시설(총무시설)은 국가 비상시설이라는 사유로 비공개함

검토 의견

비공개

화생방방호시설은 국가비상사태 시 총무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에 있는 시설로서, 국가 재난훈련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대외에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사의 단면도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지만 기관의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총무상황실, 통제실, 대피시설 등)의 상세위치는 비공개 대상정보임

- 구의정수장 보존대상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구의아리수정수센터)
- 김포공항 국제선(구2청사) 공항시설 내 소방안전시설(소방통로, 비상구)이 표시된 도면(강서소방서)
- 옛 안기부(現서울종합방재센터) 건물도면(벽체나 구조체, 층간높이, 실의 구성, 평면도, 단면도)(소방재난본부)
- ▶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통합방위법」 제21조,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제14조, 제15조), 「국방부 훈령」 제1057호(「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2009. 5. 25)에 의거,

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정유시설, 공공청사 등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 시설)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9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훈련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정보통신담당관)
- ▶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비공개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은 우리시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네트워크 경로 및 IP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고속도로 교통 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교통정보센터)
- ▶ 청구정보는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0. 10)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신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시 교통 혼란 등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의거 비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현재 및 앞으로 짜여진 당직명령부(총무과)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p>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4. 15)</p> <p>청사관리(방호) 업무의 경우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 등이 있어 비공개</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공개 여부 ▶ 비공개 	<p>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법원 2001두82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공개 여부 ▶ 비공개 	<p>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해석됨</p> <p>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서울행법 2005구합204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의 공개 여부 ▶ 비공개 	<p>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서울행법 2006구합23098)</p>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서울시의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

- ◆ 청구정보 : 측량원도(토지관리과)
- ◆ 행정심판 재결례(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
 - ☞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함 (중앙행심 2011-19000)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도면, 구조도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서울시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필요 • 급·배수 계획 	<p>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험이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p>공개될 경우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p>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p>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인감관리대장 	<p>공개될 경우 위·변조되어 범죄목적 등에 사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p>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p>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p>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시 전체 관내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 관리대상물의 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 등(소방재난본부)
-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 ▶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면 방재행정에 방해가 되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11년 3월 31일 금천구 독산3동 ○○ ○-○번지 3층 ○○어패럴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한 감식 및 추정 발화 장소 (소방재난본부)
- ▶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건 가해자의 재산피해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강남구 도로차선에 대한 정보나 신호등의 위치와 신호등의 개수가 있는 shp 파일 (교통운영과)
- 성북, 강남, 서초구 ArcGIS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기 위치 정보(shp 파일 또는 교통신호기 좌표와 명칭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교통운영과)
- ▶ 청구 정보는 공간정보보안업무계획의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 기준표 상 국가기 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좌표, 지형지물 정보 등)를 포함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면 비공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이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권리보호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해당 정보 중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되, 청구취지를 비교하여 당사자와 제3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차별화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청구 정보 중 청구인이 원하는 신호등의 위치와 신호등의 개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므로 shp 파일이 아닌 엑셀 등의 속성 파일 형태로는 제공이 가능하며,

만약 청구인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를 수용할 경우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광화문 광장 CAD 상세도면, 조감도(균형 발전과)
- ▶ 광화문 광장 CAD 상세도면(치수도면, 배관도, 배선도 등)이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 테러,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중이 이용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부분공개

청구 정보 중 테러 등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민감한 상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조감도 및 평면도 수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주상복합의 착공도면(건축기획과)
- ▶ 청구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부분공개

해당 건축물의 착공도면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공개 가능하며, 특히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물인 경우 각 타인의 재산권 침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에 한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성산대로 확장공사 관련 토지보상 내역
-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 재산 관련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부분공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나, 특정 개인의 보상내역이 아닌 총괄 현황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6년~2010년 최근 성병 관리 현황 (보건정책과)
- 유형 및 구별 성병 감염자 수와 치료자 수 추이
- ▶ 감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검사기피, 치료 거부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비공개

우리나라 국민의 에이즈·성병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여전히 높은 현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인의 통계가 공개될 경우, 감염인의 신분이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위축, 검사기피 및 치료 거부 등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13. 3. 2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출산육아담당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하는 정보로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비공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허가·준공 도면 서류일체(건축기획과)
- ▶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서 현재 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재생지원과)
- ▶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31)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1. 29)
재산의 보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 의거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6. 25)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제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의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의 공개 여부 ▶ 공개 	<p>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나,</p> <p>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리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8구합319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 공개 	<p>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p> <p>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여부 ▶ 공개 	<p>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행법 2008구합26466)</p>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함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판결 전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0두24913)

☞ 재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음

☞ 해당 업무가 종료되면 4호에 의해 비공개하지 않음. 단,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호에 의해 비공개. 특히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0두7048)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불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한 전자문서인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이외에 따로 피고 소속 조사원이 원고의 모(母)인 소외인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수기 작성 조사표’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기 작성 조사표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수기 작성 조사표는 피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기 작성 조사표에 기록된 사항이 정보공개법 제14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어야만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0두14268)

별도의 정보공시제도를 두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불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1두460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p>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p> <p>★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p>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p>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p> <p>★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p>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p> <p>★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p>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p> <p>★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여부를 재검토</p>
범죄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 청사 순찰 일지 • 청사 경비시스템 	<p>공개할 경우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p> <p>★ 관련호수 : 제2호</p>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2008년 4월 3일 ○○운수(주)로부터 ○○운수(주)로 양도인수 신고된 서류 일체(택시물류과)
- 중구 장충동 산○○-○○ 체육시설 ○○에 대한 사용수익자 지정 현황 및 쌍방간의 계약 등 협약 내용 일체(중부공원녹지사업소)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재단의 시설명세서와 소유한 미술품 목록(문화예술과)
-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기업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운수물류담당관-12867(09. 5. 13)호와 관련, 행정처분 통보에 대한 사실근거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모든 문서(택시물류과)
- ▶ 해당 정보는 당시 행정처분(명의이용금지 위반명령 감차명령)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사 관련 자료이며, 행정처분 후 관련 사법기관에서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관련 법인대표 면담결과 보고(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인대표 면담내용은 장애인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재단의 요구사항 표명 및 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전달 사항이 포함된 정보로서,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공정하고 원만한 기부채납 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해당 사건의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종결되어, 당초 정보 비공개 원인이 소멸하였으므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 같은 비공개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사건의 수사가 모두 종결되어 당초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 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 같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가린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사건의 수사가 모두 종결되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 및 법인의 영업 이익과 같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가린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사건의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종결되어, 정보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와 같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가린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 토지매각승인에 관한 질의회신 내용 (문화예술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가 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기존에 해당 지번의 거주자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당 지번의 거주자 대표가 민사소송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 토지매각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사례임
따라서 당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양천구 목동 ○○○-○○ 노외주차장 일, 월 단위 수입 및 인력 인건비, 시설비 등(주차계획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청구인과 서울시 간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와의 최초 체결한 협약서, 재계약 현황, 재계약을 일반공모를 하지 않고 ○○개발과 체결한 사유(서울대공원)
- 서울공원화사업 관련 서울○○○○○와 서울시산업통상진흥원과 협의한 내용 중 ○○○○○쇼핑몰 관련 서울○○○○○와 서울시가 협의한 내용 일체(창업소상공인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과 관련, 서울시를 상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의 건수, 소송 제기 주체 및 단체, 소송 제기일, 처리 및 진행 여부, 최근 5년간 서울시를 상대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관련 소송의 판결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각 소송으로 인해 지불(지급)된 비용과 재판 결과(주거재생과)
- ▶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관련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청구정보 중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신원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부분을 가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 외는 모두 공개

부분공개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종결된 현 시점에서 공개여부, 공개대상 및 범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는 수탁자가 보유하는 경영 노하우 및 영업이익 등 영업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현재 재판이 진행 중(항소·항고 포함)인 사안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종결되는 시점에서 공개여부, 공개대상 및 범위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개

재판, 소송,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건수와 소송 제기일자, 처리 및 진행여부는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광진구 △△역 주변 청소년 유해 선정성 전단지 광고주 등에 대한 내사계획(민생사법경찰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1. 29)

해당 문서 중 수사방법 내지 시의 판단이 노출되어 관련자가 악용할 경우 수사의 어려움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

- '13. ◇◇. ◇◇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작성한 신청인 지장이 찍힌 본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조사담당관)
- ▶ 현재 금품수수 비위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로 청구인 본인의 문답서, 진술서는 객관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8. 28)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행 중에 있어 수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술 등이 일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지장초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

- ○○역 침수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공개요청(감사담당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역일대 침수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결과, ○○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설계변경 과정에서 문서위조 의혹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 수행곤란 및 관련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4.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언론 등에 기 공개되었고, 시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수사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시 감사결과서의 보고서 내용 중 개인·법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의 의미 	<p>‘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p> <p>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 시점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함</p> <p>‘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서울행법 98구36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 ▶ 비공개 	<p>‘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심 2005-08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의 수용자 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치소 의무관이 외부 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의 이름 ▶ 비공개 	<p>외부 전문가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인천지법 2006구합39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중인 재판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문건의 공개 여부 및 범위 ▶ 부분공개 	<p>문화관광부로부터 서울특별시로 이관된 재단법인 ○○○에 관한 문건중에서 ①임원에 관한 5건의 문건 중 (i)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이사록,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 회의록,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 의사록, 종중정기총회 회의록과 (ii)신원증명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 이력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피의자처분 결과조회, ②정관개정에 관한 1건의 문건 중 (i)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ii)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05구합12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 ▶ 공개 	<p>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음(대전지법 2007구합 44069)</p>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 5호 해당 업무이거나 해당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음
- ☞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을 때만 비공개 가능
- ☞ 5호에 의한 비공개는 한시적이며,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는 시점(공개 가능 시기) 및 정보 공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될 경우 청구인이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9조제1항제5호)

★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청구 정보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는 것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에서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함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감사	• 불시감사계획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
감독 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 계획 • 불시 조사·단속 계획	증거인멸 등 지도감독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향후 지도감독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시험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 공개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 시험 채점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후 공개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이 확정된 후 공개
	•사업계획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 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하지 못한 의결서 공개로 인 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식발표 이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자 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 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 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법령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 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 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 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후 공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 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7호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연구개발의 원활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시험공고전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시험의 적절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 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청심사위원회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회의록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련 호수 : 6호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비공개 사유 소멸 → 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랑구 중화동 소재 '이화교 증설 확장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도시계획과) •홍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홍제 균형발전촉진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협의(도시정비과) •제2차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지정 관련하여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및 강동구와 사전협의한 결과(임대주택과) •지하철9호선 환경색채 보고서와 정거장 규모 등(도시철도 토목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설계계약추진 TF팀 회의 개최 (동대문디자인파크부) •서울풍물시장 위탁관리자 선정 심의내용(도로행정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관련 정보(도로계획과)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검토의견(도로계획과)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상인자격심의원칙 및 심의내용(균형 발전과) •2005년 11월 14일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관련 지역균형 발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토지이용계획(안) 관련 서울 시에서 용산구로 시달한 공문 등(재정비과) 	<p>공개</p> <p>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 (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에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강남모노레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교통정책과)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우아·방학간 경전철 연장구간 기본계획안(교통정책과)
-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안)(택시물류과)
- 버스 표준운송원가 관련 자료 중 공문(버스관리과)
- 2007 서울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교통운영과)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중기인력운영계획(조직담당관)
- 민원콜센터 추진반 구성운영계획(시민봉사담당관)

공개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할 수 있고, 미확정 내용의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강남구 도곡동 산 〇〇-〇 수용재결을 위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일시, 장소, 위원회명단, 연락처(토지관리과)
- 2009년 4월 1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〇〇〇-〇호 광파기 측량노트북에 표시된 측정점 좌표(토지관리과)
- 마곡지구 종합개발 확정내역(마곡사업담당관)
- 독섬 유수지 바닥정비공사 관련 공사계획서, 예산, 방침, 보일링 현상 관련자료 등(하천관리과)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하수계획과)
- 2007년 생활권 공원 확충 사업 추진 현황(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 자문결과(공원녹지정책과)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자원회수 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자원순환과)
- 도심형 워터파크 조성 관련 간담회 개최 내용(체육진흥과)
- 종로구 창신, 송의 뉴타운 지정(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문(문화재과)
- 2010 서울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용역(2007) 보고서(관광과)

공개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 of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자료(문화예술과)
 - 스마트폰 증강현실 구현 추진계획(문화관광과)
 - 2012년 한강사업본부 전산화 추진계획(문화관광과)
 - 서울 권역별 중심도서관 체계 구축 기본계획(문화예술과)
 - 2007년도 노인복지증진 사업내역 및 예산(노인복지과)
 - 레저세 인하 추진 관련 시도 공동대응방안 의견(세제과)
 - 2009년 1월 1일~2009년 8월 21일 시장지시사항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지시사항 목록(기획담당관)
 - 서울풍물시장 학교부지 이전 관련 검토의견 제출(학교지원과)
 - 2009년 발간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지원 학술연구 보고서(장애인복지과)
 -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방침(생활경제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할 수 있고 미확정 정보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완료, 사업 종료, 보상 완료 등)로 인해 더 이상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경우는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비공개 사유 일부 소멸 ⇒ 부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2002년 5월~12월 상암동 ○○○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회의록 일체(투자유치과)
- ▶ 해당 위원회는 ○○○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업계획평가, 심의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안양암 문화재 지정조사계획 실시공문, 조사내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문화재위원회 결정문(문화재과)
- ▶ 문화재 지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청구 정보 중 위원회 위원 및 이해 관계자 등의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 회의 결과 보고(도시기반시설본부)
- ▶ 청구 정보는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직결 세부시행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결과로서, 공개될 경우 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현재 서울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록(행정과)
- ▶ 청구 정보는 서울시 도로명 결정을 위한 회의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 등을 저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위원회에 참석한 발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보건의료정책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4. 15)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중인 사업으로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들어 비공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토록 하고,
다만, 자문위원단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가리고 공개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재검토 ⇒ 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시외버스터미널 증장기 운영방안 용역보고서(주차계획과)
- ▶ 구체적인 실현방안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지침 등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시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비공개
용역결과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면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수립된 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책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며 용역내용이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무관하다면 공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개선 관련 2008년 11월 11일 발표한 서울시 내 대규모 부지 96개의 현황자료(도시계획과)
- ▶ 발표 당시 96개의 부지는 단순히 1만㎡ 이상의 부지의 개수를 제시한 것이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서울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지를 마치 현 시점의 개발 촉진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2007년 4월~8월 서울시와 코레일 간의 13차례 회의내용 및 결과(지구단위계획과)
-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미확정된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성동구에서 신청한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신청서 서류 일체(주거재생과)
- ▶ 성동구청의 입안공고 및 결정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결정고시 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터널 면목동 방향 환기소 및 오염저감시설 시공도면과 설비내용(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 정보공개 신청한 설계변경 건은 공사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 사업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승인여부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사업 대상의 대규모 부지가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1차적으로 사업수행인가가 결정되면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해당 사업은 성동구청장이 입안공고를 통해 주민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나, 결정고시를 통해 공개한 내용 외 신청서 서류, 의견수렴 및 협상과정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경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시 이해관계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31)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변경검토·승인여부 중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비공개 결정을 인용하되,

설계변경 검토·승인이 완료되면 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안)(도시계획과)
- ▶ 자료에 서울의 중심지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 2009년 시행한 도시기본 계획 미래상 설문조사 결과 및 원자료(도시계획과)
- ▶ 설문조사 결과는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관련 정보로 수립 과정 중에 있으며,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 자문 결과보고(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 T/F지원팀 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47차)(지구단위계획과)
-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결과 (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원형택지)(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회의록 및 회의결과)(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주민갈등 해소 T/F팀 실무추진단 회의결과 보고(11차)(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서울시 대책을 논의한 제목문서)(지구단위계획과)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10. 10)

2030 서울플랜(안)은 현재 미확정된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료 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의거 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고 계획 확정 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일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22)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역 갈등영향 보고서(갈등해소담당관)
-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대응 시나리오로 갈등발생시 대응방안을 담고 있어 갈등해소 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10. 10)

요청자료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갈등해소 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거 비공개

- ○○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15명에 대한 성명, 당시 부서 및 직책, 현재 부서 및 직책, 과실 공개(조사담당관)
- ▶ 감사 등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9. 21)

내부검토 중의 사안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공개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 「○○터널 시점부 민원처리비의 총사업비 반영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도로계획과)
- ▶ 보상이 진행중에 있어 민원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이며 잔여민원인에게 회신문이 공개될 경우 민원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12. 18)

민원처리 관련 금액 및 이에 대한 총사업비 반영방법 등이 내부검토평정에 있고, 민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성격이 현저하므로 비공개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재검토 ⇒ 부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관련 법률자문 내용 및 결과(주택정책과)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p>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22)</p> <p>청구인이 요청한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편의점 관련 법률검토를 신청한 서류와 법률검토의 견서 일체 그리고 한강편의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역별 안내센터에 발송한 공문(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내부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법률자문과 관련한 문서와 매집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p>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8. 28)</p> <p>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결과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어 비공개</p> <p>단속계획은 점검·단속 시기와 일정, 점검 담당공무원 등 향후 업무와 관련해서 공개될 경우 관리, 감독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공개</p>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섬 유수지 정비공사 관련 조사결과(조사담당관) • 2006 청소년프로그램운영중간평가결과(아동청소년담당관) • 한우 둔갑 판매 관련 영업정지처분 업체명(소재지, 구, 동호수 포함)(식품안전과) • 수입한약재 안전성 확보 추진 결과 보고(강북농수산물검사소) ▶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감사·감독·검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공개</p> <p>해당 업무가 종결된 현재 시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브롬산염이 불검출된 18개 먹는 샘물업체 목록(2009년 4월~5월)(보건환경연구원)
- ▶ 해당 정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법률 개정을 위해 일부 샘물업체 제품에 대해 샘플 사전검사한 자료로서, 검사 당시는 법적으로 브롬산염이 먹는 샘물의 허가 조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가 침해받는 경영 영업상 이익과 시민이 샘물 규정에 적합한 생수를 마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비교衡量할 경우 후자의 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사담당관-3306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신 관련 조사 및 조치내용(조사담당관)
- 기양○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조사담당관)
- 직원의 뇌물수수 적발 현황(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조사담당관)
- 2011년 6월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및 계획(감사담당관)
- 20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물관리정책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감사·감독·검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해당 업무가 종결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공개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신철동~우이동에 대한 경전철이 도봉구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자료(교통정책과)
- 서울글로벌도시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 사본, 외국인 학교 추가건립 타당성용역 보고서 사본(외국인생활지원과)
- 2006년 2차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사업지역 지정 오금동 〇〇〇-〇〇〇번지 서류(송파구청으로부터 발송된 서류 일체)(주거재생과)
- 서울성곽 종합정비추진계획(문화재과)
- 안양천, 중랑천 뱃길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하천관리과)
- 지하철 9호선 추가연장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교통정책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할 수 있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연구용역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술개발 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미군기지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기지 주변지역 170만 평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서(도시계획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p>비공개</p> <p>해당 용역은 국토해양부의 용산미군기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으나,</p> <p>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유발의 위험성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p> <p>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사업 착수 시점에서 공개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지문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정을 위한 터널 주변 대기질 조사결과(보건환경연구원) ● 2013년 1분기 홍지문터널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보건환경연구원) ▶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로 아직 연구결과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p>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31)</p> <p>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조사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개토록 결정.</p> <p>다만, 대기질 측정결과가 터널인근 측정값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p>

입찰 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5월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 관련 기초금액 산출 내역서(계약심사과) ▶ 입찰 관련 정보로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관여와 압력이 예상되어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p>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6. 27)</p> <p>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은 이미 완료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현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공개로 인하여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산출내역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개가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표준운송비용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버스관리과) ● 2007년 시민·공무원 창의 제안심사 결과 자동차번호판과 보조번호판 부착 원스톱 서비스 시행 관련 제안내용, 검토내용(미래창안담당관) ●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 정보통신설비 제작구매설치 사업 평가결과서(신인도평가 세부자료)(도시기반시설본부) ▶ 입찰 및 입찰에 따른 평가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에는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및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경영·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됨 <p>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이익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p>	<p>공개</p> <p>현재 해당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주)와의 간선버스운영협약서(버스관리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2007년) 서울시와 ○○○○○(주)는 협약체결기간 중(2004년 7월~2010년 6월)이었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차기 동종의 협약 및 계약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협약 기간이 만료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정보 중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U-tour 시스템 구축계획 관련 자료(관광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2008년)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회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2010년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는 소멸되었지만, 해당 자료 중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 방법 등 정보보안사항 등 일부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동차㈜ 입찰내역서(버스관리과)

-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당시 입찰계약 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는 2004년 6월 서울시와 ○○○자동차(주) 간 체결된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로서, 입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입찰예정자였던 ○○○자동차(주)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예정가격 제시내역 등 전반적인 사업제안 내용 즉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도시계획운영체계에 따른 협상진행과정 단계별 대외 공개문서 일체(도시계획과)

- ▶ 협상지원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예비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현재 협상지원전문기관에서 사업제안자로부터 접수된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협상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협상종료시점 등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정보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를 재검토해야 함

시험 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인재개발원 채용지도요원 채용 관련 정보(면접합격 점수, 면접위원의 채점표)(인재개발원) ▶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8두8970)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검토 의견</p> <p>부분공개 청구인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 면접합격 점수와 면접위원의 채점 총괄점수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평생교육과) ▶ 면접관 각각의 점수를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p>검토 의견</p> <p>부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7.9) 면접관 각각의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비공개 다만,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각 면접관의 총점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서울시 지방직기록연구사 공무원 시험문제(인재개발원) ●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약무직 시험 10년 간 기출문제(인재개발원) ● 서울시 7급 문제지 및 정답지(인재개발원) ▶ 문제은행식 시험문제가 유출될 경우 향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검토 의견</p> <p>비공개 서울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의 경우 채용직렬과 출제과목이 많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인사 관련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계약직, 상용직) 직원 현황(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계약직인지 상용직인지 여부, 최초 채용일자, 채용 목적, 현 업무내용, 직급, 보수 내용(각수당 포함) ● 2008년 9월 11일자 지방행정6급 승진자 심사평가결과(인사과)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검토 의견</p> <p>비공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 <p>▶ 비공개</p>	<p>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대법원 2006두159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기출문제 <p>▶ 공개</p>	<p>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으로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서울행법 2005구합221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 총 응시자의 답안지 및 면접 채점표 <p>▶ 부분공개</p>	<p>답안지는 청구인이 답변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하고,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113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p>▶ 비공개</p>	<p>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2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의 현장관찰점수 <p>▶ 공개</p>	<p>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통보서에는 영역별 평균점수 및 총점이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평가 점수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다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음</p> <p>오히려 평가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중앙행심 2011-02165)</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개 	<p>청구 정보는 청구인이 본인의 권리구제 및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문실시통보 문서를 보냈다는 주장만으로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업무정지명령을 함에 있어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함(외교통상부 09-169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인자 명단, 회의록 ▶ 공개/비공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 → 명단 공개 시 각종 사회단체의 로비 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발인자 명단은 비공개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춘천지법 2004구합1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 지침에 의한 면접위원 위촉 현황 ▶ 공개 	<p>현재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출제위원의 소속(직위),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며,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임</p> <p>오히려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중앙행심 2009-20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추진단의 집행예산과 관련된 지출결의서 사본, 일자, 건별 세부내역 ▶ 공개 	<p>청구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사업추진이 현저하게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공개(광주지법 2010구합17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공개 	<p>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실적별 예산요구서 ▶ 공개 	<p>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전지법 2005구합32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 ▶ 비공개 	<p>경위서가 내부감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점 등 경위서 징구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상당하며,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개 결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 2010두187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비공개 	<p>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에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중앙행심 2011-25236)</p> <p>★ 단, 제3자(변호사) 동의 시에는 공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기준 ▶ 공개 	<p>해당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포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할 때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으며,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p> <p>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부산고법 2010누5615)</p>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사생활의 비밀 :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함

☞ 사생활의 자유 :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갈에 있어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함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 확정일자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청구한 정보가 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요소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

☞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해 처리하며,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는 비공개

☞ 공무원과 시민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관점이 상이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비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적 권리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법 제3조,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동의여부 및 동의 범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 요구할 권리 -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은 아니지만 공개 가능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제3자(정보의 이해관계인)와 관련한 정보인 경우, 제3자 의견 청취를 통해 공개 동의를 받았거나,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면 공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이나 비공개(열람 제한 및 거절)인 경우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본인의 정보이지만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신청인(청구인)이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공개 방법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고 절차는 정보공개법에 따름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안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알리고 열람 연기 가능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유형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p>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p> <p>★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p>
	<p>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p>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p> <p>공무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p> <p>★단,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를 청구한 경우는 비공개</p>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법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사실 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사실 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자 관련 기록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진정인에 대한조사내용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 기타 비(부분)공개 사례

- 사자(死者)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 시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은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비공개 하되,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
- 민원 신청서 및 회신문서는 공개함으로써 유사민원 등을 통해 개인의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공개실익이 크므로 공개하되, 개인식별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유형

대상	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 공무원의 성명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 행위담당관의 성명 등 • 소속 및 직위 • 사무실 전화번호 • 업무용 이메일 주소 •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 출장신청 및 결과 보고서 • 휴가신청서 내용 중 휴기일자 ★ 휴가지 정보는 비공개	공무원의 학력 및 경력은 해당 사항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 하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공인)	시장의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위촉된 공인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공개 • 공인의 성명 • 소속 및 직위	공인의 경력은 해당 사항이 업무와 유관하거나 행정의 신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개
일반 시민	제3자의견청취시 •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상세 지번은 제외하고 공개 ★ 도로명 주소의 경우 도로명까지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공무원의 개인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강남구 직원 ○○○이 서울시 감사실 안행감사팀원 및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판결문, 서울시측 답변서, 준비서면 일체(감사담당관) ▶ 당초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의견, 행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판결문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웹 페이지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2007년 1월~2009년 2월 서울시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일체(조사담당관)
- 2005년~2009년 경찰, 검찰에서 통보한 공무원 범죄내역(해당 부서, 연도별 분류, 범죄 혐의 내용, 사후조치내역)(조사담당관)
- 2009년, 2010년 서울시청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검찰측 통보 내용)(조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분내역은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 교량관리과에서 2000년~2001년 근무한 과장, 국장 성명과 현주소(교량관리과)
- ▶ 해당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전체 정보에 대해 비공개

- 서울시 직원(산하기관, 소속기관 포함)의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실적(기간, 내용, 성명, 직위, 소속직책, 신고 내용 일체)(조사담당관)
- ▶ 청구 정보 중 성명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과)(조사담당관)
- ▶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주소(거주지 동, 직책, 성명은 한 글자씩 익명처리)(인사과)
- ▶ 공무원의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공무원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가능한 정보이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현주소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적발자 인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서울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 등은 이미 대중에게 공공연히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익의 실익이 없으나, 단, 거주지 정보는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군필자(인사과)
- ▶ 부분공개

부분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은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내용에 한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의무신고자가 아닌 대상자의 경우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통지도단속반 소속 동남지역대장 ○○○의 임명장,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 및 수당지급 명세서 등(교통지도과)
- ▶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는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개인식별 정보로서,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2. 7. 3일 ○○대교 투신사고 관련 119신고 접수 통화내용, 접수직원 이름, 직위, 나이, 경력, 방재센터 조치사항, 경찰에 연락한 사람, 유품발견 시간 및 발견자(종합방재센터)
-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2. 8. 7)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음성파일, 접수직원의 나이와 경력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외 음성파일이 아닌 통화내용, 접수자의 이름과 직위, 조치사항, 유품발견 시간 및 발견 공무원은 공개

- 서울시장의 집 전화번호(총무과)
- ▶ 집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31)

집 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 '13년 1월~6월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보도환경개선과)
- ▶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 : 2013. 7. 31)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의 2007~2010년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인사과) ▶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경력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경력은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청구임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p>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 : 2013. 6. 25)</p> <p>김○○의 '07년~'10년까지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정보는 경력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상관없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에 대한 전액관리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바, 당시 적발 공무원의 명단 공개(교통지도과) ▶ 불복 구제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통상적인 단속활동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을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 요청 	<p>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 : 2013. 9. 2)</p> <p>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외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명과 당시의 직위는 공개</p>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총무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서울시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공인으로서 시정의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위촉된 공인의 전문성 검증 등을 위해 개인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은 가리고,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위원회 자문결과 통보(한옥문화과) ▶ 해당 정보에 성명, 건축물 주소, 건축계획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개인 소유 건축물의 상세주소 등을 삭제하고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한옥마을 경영위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심사기준과정(심사위원명단, 심사 기준 내역 및 선정 채점표, 신청자 첨부 서류)(한옥문화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입찰계약과 관련되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10년도 제4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심사위원회 명단과 각 위원의 약력 및 경력, 단체별 심사평가서, 탈락사유 등(사회적기업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함

- 2010년 10월 전통사찰 제련작업과 전통도검의 복원 종목으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건 관련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관계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문화재과)
- ▶ 당초 청구 정보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내부검토과정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현재 입찰계약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되, 향후 동종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 채점표에 특정 심사위원별 채점 점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현재 지정 사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정보 중 심사위원의 경력은 당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심사위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토한 사항까지 공개하고,

단체별 심사평가서는 특정 업체에 경영영양상 이익 및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업체에 따른 심사결과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현재 지정 사업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고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바,

해당 사례는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해당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년 검침직원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남부수도사업소)
- ▶ 검침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검침직원 업무수행능력 평가표는 개인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시험성적, 평가항목별 성적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 및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민감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자료 및 방문상담 일정 관련 기록」 중 상담번호사의 인적사항(법무담당관)
- ▶ 상담번호사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1. 11)

상담번호사의 인적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

-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중 개인 성명(정보공개정책과)
- ▶ 참여인력의 임무, 사업 착수일자 등은 공개하고 개인성명은 소속업체,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공개시 해당 개인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되고, 고급기술자 정보라 판단하여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6. 25)

개인의 성명은 소속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상당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아동복지센터)
- ▶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소신 있는 위원 회활동 보장이 어렵고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9)

위원회 위원명단은 이름, 직위는 공개

회의록 경우 피해아동 보호측면에서 사례개요, 처분결과 부분공개

시민의 개인정보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5.6.3 자가증권번호 제○○○호 관련 서류 (생활경제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청구인이 해당 자가증권상 지주 및 직계 존비속,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해당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사유로 전체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중앙행심 06-132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에 등록된 언론사 주소록(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및 출입기자단 현황(성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언론담당관) ▶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소속된 언론사 주소록은 우리시가 별도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대중에게 공공연히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생산 및 가공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능한 정보이나,</p> <p>출입기자단 개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로구 가회동 ○-○○ 한옥공사 보조금 지불 중 서울시가 ○○○에게 지불한 근거서류, 보조금 신청 서약서 사본(한옥문화과)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해당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다만, 보조금 신청서약서는 서약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은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을 등록한 자(○○○외 2명)에 대한 등록당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생활경제과)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비공개</p> <p>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 및 등록일자·번호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부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p> <p>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항에 의거, 등록부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 '등록신청인의 주소,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사용인의 주소'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p> <p>대부업을 등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특정 경유차 정밀검사 대상 차량 리스트(친환경 교통과)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차량(친환경교통과)
-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2008년 의무대상차량명령서 발송 리스트(친환경교통과)
- 차량번호, 소유주, 차명, 사용 본거지, 연락처
- ▶ 해당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종로구 계동 ○○○-○ 서울게스트하우스를 공격하는 민원 접수내용(2008년 4월 ~2008년 7월 14일)(건축기획과)
- 2010년 5월 3일 120다산콜센터에 '태평로○가 ○○번지 앞 서울신문사 가로수앞 불법현수막 단속 요청'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소속, 직업, 연락처(시민봉사담당관)
- ▶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의 진정서를 제출한 ○○ ○외 259명의 명단(지구단위계획과)
- '용산구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관련 세목(사업인정) 고시에 첨부되는 주민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제외)(지구단위계획과)
- 동대문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시 789인의 반대자들의 성명, 주소 등 명부 및 관련자료 일체(주거재생과)
-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사단법인 ○○○○협회 총대의원 명단(장애인복지과)
- (사)한국○○○○○학회 회원 명부(문화예술과)
- 침사지격증대장 열람 신청(보건정책과)
- 노인돌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혜대상자 명단(주소, 연락처 포함)(노인복지과)
- 서울시 지방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번지와 소유자(하천관리과)
- ▶ 해당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해당 정보는 차량 소유주 이름, 차량 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본거지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해당 정보 중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은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공개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제기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동의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상황 등은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년 ○월 ○일 ○○시 청구인에게 119 구급차를 요청한 신고자의 연락처(소방재난본부)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고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비공개</p> <p>119 구급차를 요청한 신고자의 연락처가 공개될 경우 원치 않는 전화를 받거나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수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내용(종합방재센터) ▶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p>공개</p> <p>(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12. 18)</p> <p>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녹취파일을 충실히 서면으로 정리한 녹취록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내 건축물 밀집지역 현황조사(공원조성과) ▶ 정보공개법 제9조1항8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p>부분공개</p> <p>(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11. 1)</p> <p>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과 건물별 허가유무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하고 그 외 부분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바○○○○개인택시 기사가 본인을 승차거부로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에 필요한 개인 신상 정보 공개요청(교통지도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p>비공개</p> <p>(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11. 1)</p> <p>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시험의뢰서 내용(보건환경연구원) ▶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p>부분공개</p> <p>(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9. 18)</p> <p>시험의뢰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p> <p>검사항목은 공개된다고 해서 의뢰인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단체 추진 위원회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제출한 설립 동의서 명단(택시물류과) ▶ 제3자의 의견청취결과, 동의한 사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협회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어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p>비공개</p> <p>(정보공개심의회 의결: 2012. 12. 18)</p> <p>동의서 명단 공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고,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건증 유무와 위생 문제에 대한 단속요청 관련 다산콜센터에 신고한 날짜(시민봉사담당관)
- ▶ 특정 개인정보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법령상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 서울시 복촌 한옥 지원 현황(건축기획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 자료에는 주소, 지원 금액 등이 있어 개인정보사항으로 판단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 인권센터 조사내역서 중 청구인 외의 조사서류(문답서, 확인서 등)(인권담당관)
- ▶ 신청인의 신청서, 문답서, 확인서는 공개하였으며, 신청인 외의 조사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 요청(기후대기과)
- ▶ 석면피해 인정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이 수록된 개인 민감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자문)결과(○○○공원)(토지관리과)
- ▶ 청구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2012.12.18)
신고한 날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고, 일반적으로 주차 위반 단속 등 각종 행정처분일은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본인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알 권리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2013.6.13)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지번, 금액, 지원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 '복촌 한옥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는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2013.6.13)
인권센터 조사내역서 중 진정인 본인의 조사내용이 아닌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2013.6.25)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은 석면피해 인정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이 수록된 개인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결:2013.7.9)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가 종료된 사항이고,
청구인이 개인정보, 경영·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요청하고 있어 재결서 내용 중 이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12. 2월~'13. 5월까지 금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참여자의 근태 등에 관련된 진정 내용 및 민원(민원인 성명 포함)(보행자전거과)
- ▶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민원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 서울 ○○사 ○○○○호 차량의 2012년 11월 12일 이후 LPG 보조금 및 카드 보조금 내역(택시물류과)
- ▶ 특정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은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7. 9)
 민원내용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리더라도 민원내용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9. 2)
 특정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일자, 사용리터, 보조금 등 지급내역은 개인택시 운전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조금 지급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대상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횟수를 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 대부업 등록부의 내용
- ▶ 공개

-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참석자명단
- ▶ 비공개

판결내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록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해당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 마련가 마련되어 참석자 명단 공개 시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여론 공격은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9구합4739)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공개 	<p>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두6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비공개 	<p>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의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대전고법 2001누21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비공개 	<p>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3두8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결과 ▶ 비공개 	<p>피고의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 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고법94구392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장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공개 	<p>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조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 공개(연락처는 비공개) 	<p>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함(서울고법 2005누170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 공개(연락처는 비공개) 	<p>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p> <p>단, 제보자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하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정보로 봄이 상당함(서울행법 2008구합26466)</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 사항 ▶ 공개 	<p>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공개(중앙행심 2010-172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사건 기록 중 ○○○○에 대한 각 진술조서 ▶ 부분공개 	<p>사건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p> <p>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비공개와 공개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서울행법 2007구합77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 공개 	<p>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1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급 순위명부 ▶ 비공개 	<p>성과급 지급대상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전지법 2005구합15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내역 ▶ 부분공개 	<p>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대법원 2009두14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 ▶ 비공개 	<p>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전라북도 행심 08-2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및 발화지점 점유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 부분공개 	<p>비공개 시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 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단, 주민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필수정보는 아니므로 비공개 (중앙행심 2009-18296)</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소, 주택유무 사실 등 <p>▶ 비공개</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서울행법 2009구합4057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p>▶ 비공개</p>	<p>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p> <p>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중앙행심 2005-174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관련되어 제기된 진정서 내용 <p>▶ 비공개</p>	<p>「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p> <p>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진정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중앙행심 05-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p>▶ 비공개</p>	<p>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수원지법 2005구합52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 <p>▶ 비공개</p>	<p>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포함되므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됨(대법원 2011두16735)</p>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법인이란 법인성을 갖춘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 단체란 법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집합체, 재산의 집합체 등의 모임
- ☞ 영업비밀이란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란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미리 방지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과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영업 및 경영과 관련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구체적인 사유(어떻게, 왜)가 제시될 수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 ☞ 위·수탁업체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우리시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

비공개 대상정보의 판단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인, 단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해당 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p>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의 경우 보조받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결산서 등 사용한 내역에 대해 공개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p>★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p>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p>공개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자금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p>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도급계약서 	<p>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p>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산업기술 • 내부 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 개찰조사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기술평가 결과 	<p>공개할 경우 해당 단체, 기업, 업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p> <p>★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p>

- ★ 수입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업체명과 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정보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부분공개
- ★ 원가산출내역은 공개한다고 해도 기업 등의 영업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서울행법 99구19984, 서울행법 2005구합12398)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체결한 실 시험약서 원본(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사업이 진행 중 이었고, 협약서 상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기밀유지 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공개</p> <p>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약서를 비공개할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시민의 알권리 및 시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공원 설립 후 2010년 3월 29일 현재까지 연도별 동물 매매 현황(서울대공원) ▶ 해당 매매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상당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공개</p> <p>연도별 동물 매매 정보가 매매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장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사장(SH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서(임대주택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대행계약서 체결과정이 진행중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체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정보에 경영·영업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p>공개</p> <p>계약서에 포함된 경비부담 및 정산보고 등의 정보가 해당 법인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현황(체육진흥과)
-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단체의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음

따라서 단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재지, 연락처 수준의 현황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지재단 정관 내용 요약(아동청소년담당관)
- ▶ 해당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포함하는 정보라는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법인의 정관은 공고 및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관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서울시가 수행하는 법인 허가업무의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 내용 중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단법인 ○○○○협회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과 임시총회록 등 변경자 변경에 관한 모든 서류(저출산대책담당관)
- ▶ 당초 청구 정보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청구 정보의 공개가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 중 내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 4월 1일~8월 31일까지의 불법도급택시로 적발되어 차량감차 등 행정처분된 택시회사 및 차량대수 현황 내역(택시물류과)
- ▶ 당초 행정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사항으로서 정보 공개 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체의 경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행정처분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특정업체명 등 업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9년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사업과 관련 계약사(주)○○컨소시엄의 참여인력 명단(총무과)
- ▶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2009년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사의 참여인력 명단은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고기술자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 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대부업 등록 현황(생활경제과)
 - 자본금, 매출액, 주소, 대표 전화번호 등
- ▶ 대부업체의 자본금, 매출액 정보는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임대료 금액과 임대료를 결정한 기록물 전문 및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한 기록물 일체(투자유치과)
- ▶ 서울시가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과 체결한 개별 임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만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약 당사자는 청구 내용이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교회와 체결한 주차장 사용계약서(한강사업본부)
- ▶ 당초 주차장 위수탁계약서를 공개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청와대 사랑채 2층 대통령관 내 유물 전 사용 유리 쇼케이스 시설 제작내역서(관광과)
- ▶ 유물을 전시한 유리 쇼케이스 시설 제작내역서 전체정보는 쇼케이스를 제작·설치한 업체의 설계·시공의 노하우로서, 공개될 경우 제작 설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해당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자본금 및 매출액은 공개될 경우 특정 업체에게 영업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인정되므로 해당 정보는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견 : 2012. 7. 27)

투명한 시정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계약서(협약서)는 공개가 원칙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건설을 논의하고 결정한 문서 목록은 전부 공개하고 문서는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영업상의 비밀 등이 언급된 부분만 가리고 공개

5개의 프로젝트 회사들과 체결한 개별임대차계약서는 프로젝트 회사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소명 받아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계약서 내용에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상당한 정보가 없으므로 계약서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정보 중 해당 업체의 제작설치 노하우 등 경영·영업상 비밀을 가진 총사업비 등 업체의 일반 현황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체육분야로 서울시청에 주무관청으로 허가된 비영리사단법인 단체의 제출 서류(○○협회 포함)(체육진흥과)
- ▶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10년 서울시 시정참여 민간단체로 선정된 ○○연합에 대하여 시정참여 단체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 서류 사본과 사업계획서, 지원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와 첨부된 영수증 사본(행정과)
- ▶ 모든 시민·민간단체들이 경쟁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쟁 민간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주)○○운수 관련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원 및 사이버 민원을 통해 적발 또는 신고된 내역(버스관리과)
- ▶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콜택시 1년 간 월별 입사자 명단 및 퇴사자 명단(택시물류과)
- ▶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부분공개

이는 비공개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청구 정보 중 해당 법인의 독특한 경영 노하우가 포함된 사업내용 일부만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단체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므로 선정절차의 투명성 보장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의 측면에서 계획서 및 정산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단, 영수증은 해당 단체만의 차별화된 사업 추진 내용에 따른 경영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분공개

해당 정보는 (주)○○운수 소속 버스기사에 대한 버스운행실태에 대한 평가기록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정보 중 버스기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업체의 인사 관련 사항은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정보이며, 입·퇴사자 명단은 개인식별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2008년, 2009년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임금지급기준(생활환경과)
- ▶ 환경미화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각 25개구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상근 근로자)과 소속 자치구청장간 단체교섭 권한을 서울시장이 위임받아 서울시장(사측 대표자)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위원장(노측 대표자) 간에 체결한 협약으로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은 개개인 간에 구청장과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바,

협약서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개인의 급여사항, 근무조건, 개인 후생복지사항 등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08년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남자의 가을 이야기' 중 피아니스트 ○○○ 씨 공연과 관련된 계약서 전문(계약처와 공연료)(문화정책과)
- ▶ 특정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기득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08. 12. 31 실시한 한강 특화공원 매점 설치 및 운영공고 관련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와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8. 28)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사업계획 및 재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노하우와 전략 등 법인의 경영·영업이익과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다만 선정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료공개(재생지원과)
-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영업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사항라는 이유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6. 1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표준재무 제표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 기술인력 소득증명원 등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로 비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09~'12. 현재까지 ○○택시에 보조한 콜 관련 금액(택시물류과)
- ▶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9. 21)
 콜 관련 보조금은 전체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및 2013년 7월 10일 충전소 관련된 서류일체(택시물류과)
- ▶ 노사간에 협약한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을 들어 비공개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9. 2)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경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충전소 명은 기 공개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개

- 서울시 지정금고 현황
- ▶ 금고은행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관련 법령(조례)을 공개하고, 연평균 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협력사업비는 시 금고 은행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9. 13)
 연평균 잔액 및 이자수익금 경우 서울시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은행의 경영·영업상 비밀과는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토록 하고, 시정협력사업비 및 이자율은 시 금고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영업전략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로 비공개

- ○○구 소재 2011년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및 에너지 사용량(녹색에너지과)
- ▶ 해당 신고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9. 18)
 에너지다소비신고 업체명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되, 사용량은 해당 사업자의 동시 공개하고, 부동의 시 구체적 사용량이 아닌 개략적인 범위만 공개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 (출납장부 및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시민봉사담당관)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사항으로 판단하고, 현재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운영중에도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경쟁관계에 있어 위탁업체별 운영장부가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들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6. 13)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 서울시와 ○○도시철도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서 중 패널리 징구 근거 부분 등(도시철도공무부)
- ▶ 협약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사항으로 판단하였고, 제3자의 의견 '협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3. 4. 15)
 협약서 중 민원처리와 관련된 내용 및 계약 공기에 대해 명백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연기될 경우 위약 패널리 근거 조항은 공개
 다만, 당초 총 사업비와 사업비 구성 상세내역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 ○○자△△△△호 ○○여행사로 이전 등록한 접수서류(버스관리과)
-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9. 21)
 양도양수신고서 중 개인정보와 양도가격과 양도시기를 제외하고 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 ▶ 공개/비공개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는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 비공개 	<p>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언론사의 수입·지출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임(서울고법 2002누1908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 	<p>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이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대전지법 2005구합29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비공개 	<p>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 시 피고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수원지법 2005구합52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련,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 ▶ 공개 	<p>정부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과 기타 매체사는 각각 한국방송공사와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와 전체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 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037)</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구입과 지출결의서' 상 계약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 ▶ 공개 	<p>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 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 정보대상이 아님(대법원 2003두8302 참조) (법령 해석례 06-0132)</p> <p>★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비공개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함(대법원 2001두64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 공개 	<p>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 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해야 하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인천지법 99구15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 공개 	<p>청구 정보 중 거래일시 및 거래장소 등의 정보가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영방송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여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대법원 2007두17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공개 	<p>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두94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 공개 	<p>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그 공개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두205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 공개 	<p>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1누17274)</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공개 	<p>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과 비교할 때 공개됨이 바람직함(수원지법 2005구합91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등의 ▶ 공개 	<p>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 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하여야 함(서울행법 2005구합123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서와 사업승인조건 및 공사도급 계약서 ▶ 부분공개 	<p>사업계획승인서와 사업계획승인조건 중 ‘총 사업비’와 ‘사업비/자금계획’ 부분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임</p> <p>공사도급계약서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자의 자금상황, 시공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중앙행심 2011-107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분양원가 산출 내역 ▶ 공개 	<p>분양이 종료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내부 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며,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님</p> <p>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서울행법 99구199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사와 ○○건설 컨소시엄간 체결한 어등산 개발협약서 ▶ 공개 	<p>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고,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보조참가자(○○리조트)는 협약에 의해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되므로 협약을 단순한 사법적·일반적 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협약의 체결이 완료된 이상 이 사건 협약을 공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지위나 사업수행에 장애가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협약체결·이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정보공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 불신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대법원 2010두12156)</p>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시설 설치·운영업체 공모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의 제출서류 <p>▶ 비공개</p>	<p>신청자들의 사업계획, 법인설립사항, 개인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경영·영업상의 비밀보장,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등의 이익이 공개상 이익보다 큼(중앙행심 09-46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센터 조성사업 계약 관련 정보 <p>▶ 비공개</p>	<p>이 건 정보는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지급 방법,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을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이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중앙행심 06-050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 <p>▶ 비공개</p>	<p>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실적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B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와 계약일자로서, A사가 ○○협회에 실적신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실적이 첨부되어 있는바, 위 정보들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p> <p>각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종 입찰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위 정보들의 제3자인 B사의 계약수주 등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의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중앙행심 2011-25236)</p>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하지 않으며, 투기 및 매점매석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만 제8호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의 판단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를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지만 하면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할 수 있음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업무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건축 및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검토결과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도면 	
지역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3차 뉴타운으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지역의 각 위치도 및 탈락지(재정비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뉴타운 지정 탈락지라고 하더라도 향후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미아 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보완요청(재정비과)
- 1, 2차 디자인서울거리 계획안 사본(도시디자인과)
- 삼청동길 및 가회동길 지역지구단위계획(한옥문화과)
-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회 결과보고(한옥문화과)
- 공공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개발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시 ○○기본계획 후보지에 대한 해당 지역 및 대표지번(주거재생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우리시 2차 주택재건축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현황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과거 정보공개 청구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규제정책이 필요했던 여건이었던 반면,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과거와 동일한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과도하게 확대 예측한 것이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개

해당 사업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정보 공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개

현재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이 고시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의료관광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및 건립 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2007년) 보고서 사본(보건정책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학술용역 보고서를 특정인에게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 점검(토지관리과)
- 울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동향보고(토지관리과)
-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09년 1월~8월 강남, 송파, 서초 부동산(빌딩) 50억 원 이상 거래 현황(지번,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토지관리과)
-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원조성을 위한 관악구 봉천동 산○○○-○○번지 보상신청(예산편성) 내용(공원조성과)
-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지번에 대한 보상 관련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인(토지 소유자 포함)에게 보상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공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당시 정보를 비공개한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개

해당 자료는 2007년도부터 내부적인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발행하는 자료로서,

자료에 포함된 서울시 재건축 예상 단지에 대한 정보, 부동산 거래 가격 등의 정보공개가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해당 정보는 주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격을 임의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이며, 아울러 건축주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공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결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번의 토지소유자 외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검토 의견

- ○○정수장 인근 ○○아파트 등 주변 거주민을 위한 대책(검토결과)(공원조성과)
-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공개 청구건은 ○○정수장 전면부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편입여부 및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원용지 편입여부는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의 재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이 미결정된 상황으로 내부결정과정의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합정 전략정비구역 MP 회의 결과보고 (건축기획과)
-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특정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용역(임대주택과)
-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 풍납토성 합리적인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보고서(문화재과)
- ▶ 보고서에는 권역별 개발방향 등 각종 부동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시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 2012. 9. 21)

해당 정보는 주민의견을 수렴, 문화재관리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에 기본계획을 수정·반영토록 건의하고자 정책참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예측만으로 비공개하기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 내용 및 처리 결과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역 신설사업) 관련 의견제출 알림」 문서(교통정책과)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항으로 판단하고 비공개

검토 의견

비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 : 2013. 4. 1)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며, 현재 △△역 역사가 결정되지 않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 2008년 이후 사유림 매수 현황
- ▶ 비공개

판결내용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결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을 매입하여 국유림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소재 지번과 면적, 매수 이유, 매수 목적, 매수 금액, 현재 활용 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임 (중앙행심 2011-30387)

- ‘충청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부분의
- ▶ 공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의 내용은 1. 과업의 이해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3. 대상지 현황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5.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충청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서울시 행심 2011-37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군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와 균유지 관리 대장 ▶ 비공개 	<p>국·공유재산 목록은 개별적인 재산명세서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정보임</p> <p>또한, 청구인의 정보 청구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 주는 것이나, 관련 법에서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전라북도 행심 2008-2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현황 중 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 활용 현황 ▶ 비공개 	<p>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32% 목표로 하는 “국유림확대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 1만 헥타르 정도를 매입하여 국유림을 확대·집단화하고 있는바,</p> <p>사유지를 매수한 임야의 지번, 면적, 매수금액 등을 공개할 경우, 사인이 국유림 주변의 토지나 임야를 미리 매수한 후 국유림확대기본계획에 따라 국유지에 인접해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추진 중인 피청구인에게 고가로 매수청구하거나 속칭 알박기 등의 투기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중앙행심 2010-30387)</p>